

대면수업과 관련한

**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증상 발현 시
행동 수칙(학생용)**

2022학년도 2학기 적용

서강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

■ 본인이 확진된 경우

-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(방역 당국의 격리 기준과 동일)를 해야 함.
- 소속 대학(원)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.
기숙사 학생의 경우 사감에게 확진된 사실을 통지해야 함.
- 소속 대학(원) 행정팀에 증빙서류와 함께 유고결석을 신청해야 함.

■ 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

- 소속 대학(원) 행정팀에서 자가진단검사 키트를 수령하여 검사한 후 검사 결과를 행정팀과 대면수업 담당 교수에게 즉시 통지해야 함.
- 자가진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.
- 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(기숙사 학생은 사감에 통지) 즉시 확진여부를 판정해주는 기관에서 추가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음성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업 참여를 자제해야 함.
- 최종 양성인 경우의 행동수칙은 “본인이 확진된 경우”와 동일함.

■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대면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

- 참여수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함(권고)
- 자가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행동수칙은 위 “대면수업 중 의심증상 발현 시”와 동일함.

※ 학생은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 코로나 관련 상황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함.